

해방 후 이광수의 ‘친일문제’ 인식과 반민특위 처리과정

허 종*

- | | |
|------------------------|------------------|
| I . 머리말 | III. 반민특위 체포와 석방 |
| II. 해방 후 행적과 ‘친일문제’ 인식 | IV. 맷음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대표적 친일파로 꼽히는 이광수의 해방 후 행적과 친일 문제의 인식을 살펴보고, 반민특위의 처리과정을 규명한 글이다. 해방 후 1년여 동안 이광수는 친일 행위를 의식하여 대외 활동과 작품 활동을 삼가고 은둔의 시간을 보냈다. 친일 세력이 권력 요직에 기용되고 친일파 처단 요구가 좌우대립으로 희석되는 정국에서 안창호 전기 집필을 계기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활동을 재개하였다. 단독정부 수립에 즈음하여 자신을 ‘반공주의자’, ‘민족주의자’임을 밝힌 후 좌파 세력을 극렬히 비난하고, 스스로 독립국 자유민으로 규정하면서 국가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였다.

그는 제헌국회가 반민처벌법을 제정하자, 자신의 친일 행위가 민족을 위한 행위였고, 조선인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친일 공범이므로 과거를 깨끗이 잊자고 주장하였다. 그는 반민특위에 체포되었으

*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부교수, hjong@cnu.ac.kr

나 곧 석방되어 조사가 지연되었다. 뒤늦게 그의 행위가 피동적이었고, 공이 크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 특별검찰부도 ‘친일파 인재론’을 내세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광수의 처벌 무산은 이승만 정권과 친일 세력의 방해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반민특위 구성원의 자격 부족과 그로 인한 친일파 처벌 의지의 약화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주제어 : 이광수, 친일, 반민족행위처벌법, 반민특위

I . 머리말

한 국가와 민족이 성격을 달리하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때 과거 정리는 당면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고난과 불행을 겪었던 과거라면 새로운 사회의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기에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도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해방 후 물적, 제도적 정리와 인적 청산 즉 친일파 청산 등 식민유산의 청산, 정리를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자는 큰 논란 없이 진행되었으나, 후자 문제는 그렇지 않았다. 친일파 처리는 해방 직후부터 대중들이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미군정 기 대다수 정치세력도 친일파 처리의 입장은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미군정기에 친일파가 처벌되기는커녕 오히려 권력 요직을 장악하였다. 정부수립 후에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이하 반민처벌법으로 줄임)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로 줄임)를 설치하여 친일파 처리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과제는 달성되지 못하였다.

친일파 처리의 좌절은 거시적 요인과 미시적 요인이 작용하였다.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한 인물을 통한 접근도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이광수를 꼽을 수 있다. 이광수는 해방 직후부터 대표적인 친일파로 지목되었으나 재기할 수 있었다. 이는 미국·미군정의 정책과 함께 국내적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이다. 또한 그를 통해 친일파 처리문제의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친일파 범주, 처리 입장을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친일파 처리별의 좌절과정과 원인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광수 개인의 위상을 고려한 개별 연구도 의의가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을 고려한다면 개인 연구를 넘어 보다 많은 측면을 살펴볼 수 있어 주목되는 대상이다.

이광수 연구는 그가 한국근대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많은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역사와 문학 분야에서 일찍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대다수 연구는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과 친일 행위, 특히 문학에 집중되었으며, 해방 후 활동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시기 연구는 그의 행적과 내면의 심리, 인식을 분석한 연구도 있으나,¹⁾ 대부분 그의 자전적 작품의 의미를 규명하는 데 집중되었다.²⁾ 역사 분야에서는 친일파 옹호론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그의 인식을 정리한 연구가 유일하다.³⁾ 기존 연구로 해방 후 이광수의 활동에 대한 개략적인

1) 김윤식,『이광수와 그의 시대』 2(솔, 1999).

2) 이동하,『이광수와 채만식의 해방기 작품에 대한 연구』『배달말』 16(1991) ; 심원섭,『李光洙의 菩薩行 誓願과 親日의 問題-해방기 산문과 시편들을 중심으로』『한림일본학연구』 7(2002) ; 방민호,『이광수의 자전적 문학에 나타난 작가의식 연구』『어문학논총』 22(2003) ; 최주한,『자전소설『나』의 '참회록'으로서의 성격』『제국 권력에의 야망과 반감 사이에서』(소명출판, 2005) ; 노연순,『해방 전후 이광수 문학에 나타난 민족의 의미』『한국현대문학 연구』 26(2008) ; 김종수,『해방기 출판시장에서 이광수의 위상』『민족문화연구』 52(2010) ; 김경미(ㄱ),『해방기 이광수 문학의 기억 서사와 민족 담론의 양상』『현대문학이론연구』 43(2010) ; 김경미(ㄴ),『해방기 이광수 문학의 자전적 글쓰기의 전략과 의미 : 『돌베개』와 『나의 고백』을 중심으로』『한민족어문학』 59(2011) ; 서은주,『해방 후 이광수의 "자기서술"과 고백의 윤리』『민족문화연구』 58(2013).

3) 윤경로,『친일(파) '비호, 옹호론'의 실상과 비판-이광수의 '친일파의 변' 비판을 중심으로』『한성사학』 19(2004).

내용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사실관계에서도 오류가 많다. 무엇보다 그의 활동을 추동한 動因에 대한 규명이 과제로 남아 있다. 그가 친일파 처리과정에서 항상 중요하게 부각되었으나, 처리가 무산된 배경과 원인에 대한 규명도 과제로 남아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해방 후 이광수의 행적과 친일파 처리의 인식, 그리고 반민특위의 처리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해방 후부터 정부수립 이전까지 그의 행적과 동인, 그 의미를 규명하고, 친일파 범주 및 처리에 대한 그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정부수립 이후부터 반민특위 체포 이전까지 그에 대한 사회 분위기, 반민특위 체포과정과 심경을 살펴보고, 정국 변화에 따른 반민특위 처리과정과 문제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II. 해방 후 행적과 ‘친일문제’ 인식

이광수는 1944년 3월부터 이주하여 살던 경기도 양주군 진건면 사능리에서 해방을 맞았다.⁴⁾ 해방 직후 사능에서는 여느 지역과 같이 대중들이 관공서와 일제 관리를 공격하고 배급창고에 비축된 쌀을 반출하였으며, 축배를 들며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였다. 그도 자신을 찾아온 주민들과 함께 축배를 들고 애국가를 부르며 기쁨을 나누었다. 또한 자신을 방문한 초등학교 교사들과 향후 활동 방침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4) 이광수는 해방을 8월 16일, 그의 가족은 8월 15일 오후에 알았다고 밝혀 차이가 있다. 그가 외질지 않은 지역에서 해방 다음날에 알았다는 기억을 신뢰하기 어렵다. 단순한 기억의 착오라기보다는 시국에 무관심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광수(一), 『나의 告白』(春秋社, 1948), p.188 ; 이정화, 『그리운 아버님 春園』(우신사, 1993), p.75).

해방은 민족을 위해 ‘멸사봉공’했던 이광수에게 큰 기쁨이기도 했지만, 그 때문에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어려움을 생각하면 웃지도 울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그는 먼저 대중들이 면사무소와 면장 집을 부수는 모습에서 그 전조를 보았다. 인근 지역에서도 일어난 같은 상황을 듣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해방 직후 경기도 전역에서 대중들이 일제 관리를 공격하였고, 일본인 관리보다 오히려 조선인 관리에 대한 공격이 더 많았다.⁵⁾ 서울에서 產院을 운영하던 그의 부인 許英肅이 전하는 서울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그녀는 서울에서 그를 친일파라 욕설하고, 처단을 주장하는 글이 나붙었다고 전하였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공격을 우려하여 피신하도록 권하였다. 그러나 그는 부인의 간청을 물리치고, 계속 사능에 머물겠다고 밝혔다.

그는 훗날 ‘훼절’로 자결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할 바에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잔류했다고 밝혔다.⁶⁾ 여기에 서울로 갈 경우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피해보려는 의도도 있었음을 쉬이 짐작할 수 있다. 이후 그를 공격할 것이라는 얘기를 부인이 듣고 신변 보호를 위해 청년들을 사능으로 보내거나 피신을 권하기 위해 그를 찾기도 하였다.⁷⁾ 그와 부인의 우려처럼 이 무렵 정치세력과 대중들의 주요 관심 중의 하나가 친일파 처리문제였다. 해방 직후부터 건국준비위원회를 비롯한 대다수 정치단체와 정당이 친일파의 처벌 또는 배제를 주장했으며, 조선인민공화국 산하에 친일파를 조사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특히 이광수를 제1급 민족반역자로 규정했으며, 그를 비롯한 친일파로 지목된 주요 인물들의 친일 행적을 담은 글이 잡지에 실리기도 하였다.⁸⁾

5) 해방 후부터 미군 진주까지 경찰 출근율이 일본인은 90%인데 비해 조선인은 20%에 불과 했다(허종,『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선인, 2003), p.51).

6) 이광수(一), 앞 책, pp.190-191.

7) 이정화, 앞 책, pp.75-77, 81-82.

8) 허종,「해방직후 ‘친일파’ 처리에 대한 각 정치세력의 인식과 대응」『대구사학』 55(1998),

해방 후 이광수가 ‘謹慎’하고 있을 무렵 세간에서는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정신이상이 되었거나 출가했다는 풍문이 떠돌았다. 그러던 중 1946년 6월에 처음으로 그의 동향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 해 5월 31일 그가 부인과 함께 종로구청에 協議離婚届를 제출했다는 소식이었다. 두 사람의 이혼 사유를 전처 자식과의 불화 때문이거나 부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소문도 있었지만,⁹⁾ 사실이 아니었다. 이혼 후에도 함께 생활한 데서 보듯 일종의 위장이혼이었다. 이혼은 서울에서 친일파 처리 논쟁의 추이를 지켜보던 부인이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향후 그가 친일파로 규정될 경우 재산이 몰수되고 가족이 입을 피해를 막기 위한家長으로서의 고육지책이었다. 이를 두고 세간에서 “잇속 빠른 길”이라고 비판했듯이,¹⁰⁾ 대중에게는 한낱 재산을 빼돌리려는 꼼수로 보였다.

1946년 9월 이광수는 사능을 떠나 봉선사로 이주하여 光東中學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영어와 작문을 가르쳤다.¹¹⁾ 이는 이 학교 교장 李學洙의 요청과 호구지책으로 받아들였지만, 그의 표현대로 특별히 마음끄는 것이 없는 사능에서의 무료한 생활에서 벗어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 계몽자로서의 욕망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교사 생활도 좌파 성향의 교사와 학생들의 주도 아래 작문 시험을 거부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순탄치 않았다.¹²⁾ 이 일은 그를 친일파로 간주하여 배척·거부하는 사건이었기에 자존심의 상처를 넘어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다. 또한 일찍부터 반공주의자였던 그가 좌파 세력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졌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pp.72-78.

9) 『조선일보』(1946.6.12.) ; 『자유신문』(1946.6.14.).

10) 『서울신문』(1946.6.13.).

11) 이광수(李光洙), 『돌벼개』(生活社, 1948), p.7.

12) 신용철, 「돌베개의 문인 나그네 춘원」『제9회 춘원연구학회 학술대회-해방공간과 춘원-』(춘원연구학회, 2015), pp.97-98.

이광수의 ‘근신’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 그는 서울에서 崔麟·朱耀翰·朱耀燮·金大羽·桂光淳 등 당시 친일파로 널리 알려진 인물들과 모임을 가졌다. 그가 이들을 만난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없지만, 참여 인물과 ‘興士團國內委員會’의 이름으로 3일 동안 회합한 사실로 보아¹³⁾, 일제시기 그가 활동했던 ‘同友會’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 이들의 회합은 친일파로 몰려 곤경에 처해 있던 이들이 흥사단과의 관계를 매개로 재기를 도모하려는 시도였을 가능성이 높다. 흥사단국내위원회는 해방 후 흥사단 간부 安鍾翊·金秉煥·金朋濬 등이 귀국하여 국내의 張利旭·金允經·朴寶玄·金善亮 등과 함께 조직한 단체였다. 9월 28일 제1차 국내대회를 개최하여 미국에 있는 흥사단 본부의 서울로의 이전과 국민교화운동을 펼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¹⁴⁾ 이광수가 사능을 떠나 봉선사와 교사 생활을 하면서 쓰기 시작한 「山中日記」 가 9월 28일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아,¹⁵⁾ 그는 이날 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언론은 이들의 회합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해방 후 자주적 정부 수립을 위해서는 친일파·민족반역자 숙청이 급선무인 정국에서 이들이 세력을 강화하여 친일파·민족반역자 숙청의 열망을 냉각시키고, 이들을 옹호하는 정세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1938년 안창호의 순국 이후 흥사단 단원의 친일 행각을 비판하고, 이들의 동향 감시를 계울리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문하였다.¹⁶⁾ 흥사단국내위원회는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하여 단체 성격과 이들 모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理事部長 안종익은 회합에 참석한 최린·김대우·계광순이 흥사단과 관련 없고, 흥사단이 정치단

13) 『동아일보』 (1946.10.10.).

14) 『자유신문』 (1946.10.16.).

15) 이광수(－), 앞 책, pp.17-47.

16) 『동아일보』 (1946.10.10.).

체가 아닌 교양훈련운동단체라고 밝혔다. 특히 이전 단원으로서 친일 행위를 저지른 인물을 엄격하게 숙청하고 자기비판을 요구하겠으며, 깨끗한 인물을 규합하여 안창호의 遺業을 잇겠다는 입장을 밝혔다.¹⁷⁾ 이들 회합의 의미를 축소했을 뿐 자신들과 관계가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이광수가 친일파로 지목된 인물들과의 회합은 친일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은인자중하던 그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후 활동을 재개하는데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그가 안창호 전기를 집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1947년 1월 이광수는 ‘島山安昌浩先生記念事業會’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던 관계자로부터 안창호 전기의 집필을 의뢰받았다.¹⁸⁾ 그는 흔쾌히 승낙하고 “민족에 대한 속죄의 심경”으로 집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전기 집필에 전념하기 위해 교사를 그만두고 사능으로 돌아갔으며, 안창호 전기를 집필한다는 사실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졌다. 같은 해 4월 6일에 열린 기념사업회의 발기인회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사업회 사무실도 드나들지 않았다. 심지어 집필에 필요한 자료도 다른 곳에서 전달받거나 사업회 관계자가 사능까지 찾아가 전달할 정도였다.¹⁹⁾

이광수가 전기 집필에 전념한 결과 5월에 안창호 전기가 발간될 수 있었다. 그러나 책의 저자는 그가 아닌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로 표기되었다. 기념사업회가 당시 그의 이미지가 대중들에게 너무 나빠 안창호의 이미지마저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²⁰⁾ 이 책의 발간은 주요 일간지에 소개되었으며, 광고도 대대적으로 실렸

17) 『조선일보』(1946.10.15.).

18) 김윤식, 앞 책, pp.395-396.

19) 『경향신문』(1947.4.6.) ; 『한국일보』(1981.7.7.).

20) 이광수의 저자 표기는 한국전쟁 이후 나온 3판부터였으며, 이때 일부 독자와 홍사단 단원들이 안창호 전기 집필을 이광수에게 맡긴 것에 대한 항의가 계속되었다(『한국일보』(1981.7.7.)).

다.²¹⁾ 전기 집필 사실과 자신의 이름이 빠진 채 발간된 책은 대중에게 그의 친일 이미지를 탈색시키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스스로 밝힌 것처럼 민족에 대한 속죄 심경의 결과물이었기에 그가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아울러 이 무렵 발간된 그의 소설 『꿈』의 판매 실적도 자신감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²²⁾ 여기서 기념사업회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념사업회가 친일 행위자의 엄격한 숙청과 자기비판을 요구하고, 청신한 인물로 안창호의 유업을 잇겠다는 공언과는 달리 친일파로 지탄받던 이광수의 글재주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집필을 맡긴 것은 모순의 자세였다. 이는 친일 세력에게 점점 유리하게 조성되는 정국 흐름과 함께 이광수의 재기를 가능케 했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광수가 자신감을 회복하는 만큼 사능에서 서울로 오가는 횟수와 서울에 머무는 시간도 늘어났다. 1946년 10월 친일파와의 회합 이후 신병과 딸의 수술을 계기로 이따금 왕래했던 그가 안창호 전기가 발간된 후 장시간 서울에 머물렀다.²³⁾ 특히 1947년 9월에는 미군정청 議政官의 자격으로 귀국한 徐載弼의 환국 환영회에 참석할 정도로 자신감을 크게 회복하였다.²⁴⁾ 이 무렵 이광수는 김구의 『백범일지』 출간에 참여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1947년 12월에 출간된 이 책의 저자나 편집자 이름에 그의 이름이 없고, 참여했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출간에 참여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²⁵⁾ 다만 그의 아들이 경교장으로부터 백범일지 원본과 원고를 전달했다는 증언, 이 책에 첨부된 「나의 소원」과 이광수의 『돌벼개』에 실린 3편의 글과

21) 『동아일보』(1947.6.26,27.) ; 『경향신문』(1947.6.27.).

22) 김윤식, 앞 책, pp.394-399.

23) 이광수(✉), 앞 책, pp.162-174.

24) 김원모, 『영마루의 구름-춘원 이광수의 친일과 민족보존론』(단국대학교출판부, 2009).

25) 이 책을 출판한 國士院은 김구의 당질 金興斗와 金麗植의 동생 金志林이 운영한 출판사였 다(선우진 지음·최기영 역음, 『백범 선생과 함께 한 나날들』(푸른역사, 2009), p.76).

유사한 점,²⁶⁾ 교열 수준을 고려할 때 그가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²⁷⁾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광수의 자신감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었다.

이 무렵 이광수를 비롯한 친일 문학가의 활동을 제약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광수와 朴英熙의 저서가 발간되자, 좌파 계열의 문학가단체인 ‘조선문학가동맹’은 이광수를 포함한 친일파·민족반역자 작품의 발매 금지와 반역자 규정에 따라 처단될 때까지 언론·출판·집회 등의 일체 활동을 금지시키고, 이들의 단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²⁸⁾ 이는 별다른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였다. 이 단체가 주장한 반역자 규정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7월에 제정한 「민족반역자·부일 협력자·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를 지칭했으며, 그 해 11월에 미군정이 특별조례의 인준 보류를 결정하여 실시가 무산되었다. 더구나 유엔 총회가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결정하면서 정국이 오히려 이광수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그 해 겨울 이광수는 자신의 신병을 걱정하는 가족의 권유로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그는 1948년 3월 서울에서 『돌벼개』 발간을 마무리 지었다. 그는 책 발간 이유를 인생의 마무리를 앞둔 시점에서 총결산 할 필요가 있고, 자신의 철학을 정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²⁹⁾ 이 책에 실린 15편의 글 가운데 「죽은 새」를 비롯한 12편의 글은 1946년 하반기부터 1947년 중반기까지 사능과 봉선사에서 수필 형식으로 쓴 글로, 일상을 관조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내용이었다. 「내 나라」를 비

26) 「나의 소원」의 ‘민족국가’, ‘정치이념’, ‘내가 원하는 나라’와 『돌벼개』의 「사랑의 길」, 「인생의 기쁨」, 「내 나라」의 내용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27) 도진순, 『白凡逸志』의原本筆寫本出刊本 『한국사연구』 92(1996), pp.162-163 ; 김원모, 앞 책, pp.1086-1088. 이광수가 『백범일지』 출간에 참여했다면,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관계자와 같이 김구 측근도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귀국 후 김구가 이광수에 대한 격렬한 분노와 비난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28) 김종수, 앞 글, pp.202-203.

29) 이광수(✉), 앞 책, pp.11-12.

롯한 3편의 글이 1948년 서울에서 논문 형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피력한 글이었다.³⁰⁾ 같은 책에 실린 글이 내용의 큰 차이를 보이는 까닭은 정국 변화에 따른 그의 자신감이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돌벼개』에서 그의 정치 이념이 드러나는 글은 「사랑의 기쁨」과 「내 나라」 편이다. 이광수는 전자의 글에서 주고받는 것의 ‘경우’와 주는 것의 ‘사랑’과 비교하면서 앞으로 수립될 국가 목표는 ‘사랑의 나라’이며, 이는 공평한 분배와 보복을 의미하는 ‘正義’, 개인이 민족의 사욕을 채우는 의미의 ‘自由’ 등이 횡행하는 ‘경우의 세계’인 현재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책에서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주장은 「내 나라」 편의 글이었다. 그는 새 나라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영식 민주주의와 소련식 민주주의가 모두 진리는 아니지만,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에서 전자를 선호하고 후자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특히 국내 좌파 세력은 소유권 폐지, 무산 계급의 공산당 독재국가 수립, 한국의 소비에트 연방 가입이 목표이므로, 이들에게 민족적인 자주독립 국가를 말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국가 건설 과정에서 좌우합작은 ‘妖術’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³¹⁾ 그는 1948년 8월에 발표한 시에서도 미소공동위원회와 남북협상을붉은 ‘요술’로 표현하며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³²⁾ 그의 주장은 김구의 「나의 소원」과 글의 구성 및 내용이 거의 일치한 점을 볼 때 김구의 사상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자신을 김구와 일치시켜 친일 이미지를 탈색시키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 편의 글은 1947년 11월 유엔의 남북한 총선거 실시의 결정 혹은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의 남한만의 단독선거 결정에 따라 실시될 선거와 이어지는 정부 수립을 앞둔 정국에서 대중을 향한 계몽의 글이었

30) 김경미(✉), 앞 글, p.717.

31) 이광수(✉), 앞 책, pp.219-225.

32) 이광수(✉), 「나는 독립국 자유민이다」『이광수 전집』 9(삼중당, 1973), p.508.

다.³³⁾ 동시에 자신을 당시 ‘여의봉’과 같았던 ‘반공주의자’와 ‘민족주의자’임을 대중에게 밝히는 일종의 사상 고백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요컨대 앞으로 자신의 생존을 위해, 나아가 스스로를 주체로 재건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쓴 글이었다.³⁴⁾

『돌벼개』를 마무리 지은 후 이광수는 1948년 봄에 다시 사능으로 돌아갔다.³⁵⁾ 그는 정부 수립을 앞두고 지은 시에서 5·10 선거에서 투표한 사실을 두고 조국이 자신을 용납하여 불렀다고 표현하며, 사는 날까지 독립국 자유민으로 조국을 찬양하는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³⁶⁾ 해방정국에서 그가 지은 대부분의 시가 미공개 되었음에 비해 이 시는 친일 문인 金東煥이 발간한 잡지에 실려 공개되었다. 이는 외부 시선과는 무관하게 그가 친일파 딱지를 벗어내고 자신감과 자존심을 완전히 회복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행위였다.

자신의 사상을 고백한 후 이광수에게 마지막 남은 과제는 자신을 정조준하고 있는 친일파·민족반역자라는 창을 꺾는 것이었다. 그래야만 자신이 완전하게 부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1948년 12월에 발간된 『나의 告白』 이 자신의 방패였다. 이 책은 같은 해 7월 제정된 헌법에 친일파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문화되고, 제헌국회가 반민처벌법 제정을 논의할 무렵부터 집필이 시작되었다. 집필 이유를 자신의 친일 행위 동기를 밝히고, ‘여수·순천 군인반란 사건’ 이후 직면한 민족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³⁷⁾ 그가 반민처벌법 제정이 아닌 ‘여수·순천 군인반란사건’을 계기로 잡은 이유는 이승만 정권이 친일파 처벌보다 반공체제의 확립을

33) 김경미(李敬美), 앞 글, p.726.

34) 서은주, 앞 글, p.166.

35) 이광수, 「보내기」 『이광수 전집』 9(삼중당, 1973), p.507.

36) 이광수(李光洙), 앞 책, pp.507-509.

37) 이광수(李光洙), 앞 책, p.6.

국가 건설의 방향으로 잡으려는 의도를 누구보다도 잘 간파했기 때문이었다.³⁸⁾

이 책의 부록으로 실린 「親日派의 畧」은 친일파 범주와 처벌문제에 대한 그의 인식과 입장을 정리한 글이었다. 이 글은 자신이 친일파와 많이 교류하여 그들의 심경을 가장 잘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소개할 ‘의무’를 느껴 집필했다고 밝혔다.³⁹⁾ 그는 자신과 직접 관계없는 제삼자의 입장에서 썼다고 밝혔지만, 해방 직후 그의 경험과 인식을 함께 다루고 있어 사실상 자신의 입장이었다. 또 하나 주목되는 사실은 이 글이 자신을 점점 옥죄는 반민처벌법을 의식해서 집필했고, 나아가 반민처벌법을 정면으로 비판한 성격의 글이라는 점이다.

이광수는 이 글에서 친일파 처벌문제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친일파 범주에 대해 ‘친일 공범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弘濟院 沐浴」에서 친일파 범주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사십년 日政밑에 일본에 협력한 자, 아니한 자를 가리고, 협력한 자 중에서도 참으로 협력한 자, 할 수 없어서 한 자를 가린다 하면 그 결과가 어찌 될 것인가.

日政에 세금을 바치고 호적을 하고 법률에 복종하고 일장기를 달고 황국신민서사를 부르고 신사에 참배하고 국방현금을 내고 관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한 것이 모두 일본에의 협력이다. 더 엄격하게 말하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도 협력이다. 왜 그런고 하면, 그가 협력을 아니 하였던들 죽었거나, 獄에 갔겠기 때문이다.

이광수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이 정도 차이만 있었을 뿐 모두 일제에 협력했다는 논지를 펼쳤다. 심지어 죽지 않고 생존했던 모든 조선인이 일제에 협력했으며, 협력하지 않았다면 죽거나 투옥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일제에 협력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해외에서 生長한 사람들뿐이라고 주장하였다.⁴⁰⁾ 그의 주장은 해방 후 친일파 처벌문제

38) 서은주, 앞 글, p.176.

39) 이광수(一), 앞 책, pp.5-6.

를 두고 전개된 논쟁의 내용과 결과를 외면한 억지였다. 친일파 처벌을 위해 제정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특별조례」와 제헌국회의 반민처벌법은 치열한 논쟁 끝에 친일파·민족반역자의 범주를 ‘현저’, ‘악질’ 행위자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나아가 ‘가감례 조항’을 두어 처벌 대상자를 가능한 줄이면서 포용하고자 했다. 결국 궁지에 몰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애꿎은 사람을 끌어 들여 다소의 어려움을 평계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그만두자는 논리였다.

그의 ‘친일 공범론’은 자신의 독창적인 논리가 아니었다. 해방 직후 윤치호가 그와 똑같은 논리를 펴으며, 정당을 만들고 신문을 발행하며 친일파 처벌 반대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쳤던 李鍾榮도 같은 논리를 펴다.⁴¹⁾ ‘친일 공범론’은 친일파와 친일파 처리를 반대했던 세력이 해방 직후부터 내세운 논리였으며, 이광수는 다만 이 논리를 정리하여 대중에게 확산시키려는 데 불과했다. 이광수는 한 걸음 나아가 친일파가 민족의식이 강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애초에 친일파를 자신의 지위와 이익을 도모하는 자로 단정했지만, 이들과 교류하면서 같은 민족임을 깨달았고, 민족의식이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강했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를 이들이 일본인과 접촉하면서 차별대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⁴²⁾

이광수의 ‘친일 공범론’은 친일파 처벌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졌다. 그는 조선인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친일행위를 했으므로 三學士의 절개를 표준으로 ‘친일 공범’인 민족 전체를 단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민족에게도 이롭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⁴³⁾ 따라서 병자호란 때문에 생겨난 ‘홍제원 목욕’처럼 모두 용서하거나 로마의 ‘忘却法(Act

40) 이광수(『), 앞 책, p.198.

41) 『대동신문』(1945.12.8. 1946.9.14) ; 윤경로, 앞 글, pp.20-21.

42) 이광수(『), 앞 책, pp.5-6.

43) 이광수(『), 앞 책, p.200.

of Oblivion)'과 미국의 '赦免法(Law of Amnesty)'처럼 불문에 부칠 것을 주장하였다.⁴⁴⁾ '망각론'도 이광수가 처음으로 주장한 논리가 아니었다. 망각론은 해방 직후 친일파 이종형이 결성한 '民衆黨'이 "금일부터 과거의 착오를 일체 청산하고 빛나는 새 건설에만 매진하자"는 선언과 "과거의 과오는 잊어버리자"는 표지에서 처음 나왔다.⁴⁵⁾

이광수는 친일파 처벌 반대를 넘어 친일파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그는 경찰, 군수, 판·검사, 부회의원 등 조선인 관공리들이 일반인보다 해를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조선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했으며, 심지어 이들이 일반인보다 더 심한 서러움을 당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그는 반민처벌법 제4조에 규정된 친일파를 일일이 나열하며 그들의 행위를 옹호 또는 변호하였다. 특히 고등관 3등급 이상을 지낸 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는 반민처벌법 제5조를 겨냥하여 이들이 경험 있는 능력자이자 수재로서 고귀한 존재이므로 이들의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⁴⁶⁾ 이광수 자신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 현병·현병보·고등경찰직에 있었던 자는 친일파로 인식했기 때문인지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반민처벌법을 맹렬히 비난하였다. 그는 미·소의 대립, 국토와 민족 분단을 극복할 해결책이 '민족의 人和'임에도 불구하고 반민처벌법으로 민중의 골수를 뚫는 분열이 생겼다고 비판하였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반민처벌법이 시행되면 친일파와 그 가족 수십만 명이 반민족적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건국에 협력할 자격을 상실하여 국가 건설의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국가 건설의 일꾼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제 관공리나 친일파로 지목된 사람도 인재본위로 골라 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해방 후 3년 동

44) 이광수(『』), 앞 책, pp.206-207.

45) 民衆黨, 「선언」「標幟」(1945.8)(심지연, 『해방정국 논쟁사』 I(한울, 1986), pp.84-85).

46) 이광수(『』), 앞 책, pp.202-203.

안 친일파가 받은 舌誅·筆誅의 고통이 3년 징역과 같았고, 반민처별법 제정으로 民族大義의 지향을 명시했으므로 더 이상 추궁하지 말고 망각법을 결의하여 민족 대화합을 회복하는 것이 현명한 조치라고 주장하였다.⁴⁷⁾ 요컨대 이광수의 친일파 처리에 대한 입장은 ‘忘却’이었다. 그는 이미 ‘조국’의 부름을 받아 주권을 행사한 ‘독립국 자유민’이었기에,⁴⁸⁾ 모든 과거를 잊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입장이었다. 이것이 친일단체에서 함께 활동했던 동료 문인 金東仁이 그가 민족에게 큰 실수를 저질렀고, 민족의 일원으로 재출발하기 위해 참회와 솔직한 사죄를 간절히 요청⁴⁹⁾한 데 대한 그의 대답이었다.

III. 반민특위 체포와 석방

이광수가 ‘친일 공범론’을 내세우며 ‘망각’을 강변하고 있을 때, 사회 분위기는 그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친일파 처벌의 분위기는 제헌국회가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고조되기 시작했으며, 국회는 별다른 논란 없이 헌법에 친일파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문화하였다. 이어 제헌국회는 애국선열의 추모와 민족정기를 확립하고, 정부수립으로 새로 임용될 공무원 중에서 친일파가 배제되어야 정부의 정통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정부수립 직전부터 소장파 의원들의 주도로 반민처별법 제정문제가 논의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친일파 범

47) 이광수(一), 앞 책, pp.208-213.

48) 이광수(二), 앞 책, pp.507-509.

49) 김동인, 「春園의『나』」『新天地』 3-3(1948), pp.120-122.

주, 처벌 수위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그 결과 9월 7일 반민처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10월에 반민특위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마쳤다.⁵⁰⁾

반민처별법 공포와 반민특위 설치에 발맞추어 친일파 처벌의 사회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10월 4일 전국 학무국장 회의에서 孫晉泰 문교부 편수국장이 이광수와 최남선의 저서가 학생들의 민족정기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교과서와 부교재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시하였으며, 安浩相 문교부장관도 이를 재확인하였다.⁵¹⁾ 사용 금지된 이광수의 저서는 일제강점기에 자신이 쓴 글을 묶어 발간한 『文章讀本』 이었다.⁵²⁾ 한 신문은 문교부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이들의 책이 교과서로 사용되어 의식 형성기에 있는 학생들의 민족사 탐구에 많은 해독을 끼치고, 문화 발전을 저해했다고 논평하였다. 이런 분위기와는 아랑곳 없이 최남선은 “내가 친일파인가 아닌가는 나의 저서가 굉장히 팔리는 것으로 보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라며 당시 분위기와는 동떨어진 입장을 보였다.⁵³⁾

반민특위 활동을 앞두고 친일파 행적을 정리한 책도 속속 출판되었다. 『親日派 群像』은 친일파를 ‘자진적으로 나서서 성심으로 활동한 자’와 ‘피동적으로 끌려서 활동하는 체 한 자’로 분류하고, 전자를 다시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⁵⁴⁾ 이 가운데 이광수를 김동환·文明琦와 함께

50) 허종, 앞 책, pp.129-142.

51) 『자유신문』(1948.10.5,10.).

52) 『조선일보』(1948.10.12.) ; 春園 李光洙, 『文章讀本』(大興出版社, 1948).

53) 『국제신문』(1948.10.7.) ; 류시현, 「해방 후 최남선의 활동과 그에 관한 ‘기억’」『한국사학보』 27(2007), pp.152-153.

54) 다섯 가지 분류는 (1)친일과 전쟁협력이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 또는 지위의 보전, 신변의 안전 등을 위하여 행한 자, (2)친일을 하여 내선일체를 기하고, 전쟁에 협력하여 일본이 승전할 시는(그들은 일본의 패전을 예상치 못하고) 조선 민족의 복리를 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 자, (3)친일과 전쟁협력으로써 관헌의 환심을 사서 관력을 빌려 세도를 부리며, 이권 등을 획득하여 사익을 도하며, 또는 대의사, 고관 등 영달을 목적한 자, (4)고관 전직자, 친일파의 거두 등은 既張之舞니 이러한 기회에 일층 적극 진충보국하면 자

‘狂病的 친일 및 열성 협력자’로 분류하였다. 또한 그가 1940년부터 해방 직전까지 신문과 잡지에 게재한 글과 좌담회 참석 현황을 정리하고, 친일 성격의 논문 2편의 요지를 소개한 후 그의 전쟁 협력은 세인들이 ‘狂洙’라고 할 만큼 열광적이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⁵⁵⁾

반민특위 활동 초기에 발간된 책도 이광수를 대표적 친일파로 규정하였다. 대표적인 친일단체에서 활동했던 그의 직책과 행적을 정리하고, 주요 친일파 16명의 친일행적을 정리한 내용 속에도 포함하였다. 내용은 ‘流暢한 文章으로 皇道宣揚을 鼓吹한 親日狂洙 李光洙의 罪惡史’의 제목으로, 전시체제기에 그가 각 신문과 잡지에 발표한 논문 및 담화, 강연회를 정리한 것이었다.⁵⁶⁾ 한 잡지도 朴興植·李鍾榮·朴重陽 등과 함께 그를 ‘親日 10巨頭’로 규정하였다.⁵⁷⁾ 이처럼 이광수는 광적인 친일 행위로 ‘미친 광수’로 불릴 만큼 적극적 친일행위자인 민족반역자로 규정되었다.

한편 반민특위는 예비조사를 통해 1차로 체포할 친일파를 선정하고, 1949년 1월 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반민특위는 우선 도피를 시도하거나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하던 자들의 체포에 나서 1월 8일에 朴興植을 가장 먼저 체포하고, 이어 李鍾榮을 체포하였다. 이들이 체포된 직후 반민특위는 이광수와 김동환 등 대표적인 친일파로 지목된 15명도 조만간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⁵⁸⁾ 그러나 이광수는 20여 일이 지난 후에야 체포되었다. 도피 시도와 반민특위 활동방해, 정치분야와 경제 분야의 친일파를 우선적으로 체포한 후, 이광수가 포함된 사회문화 분야의 친일파 체포에 나섰기 때문이었다.

기 개인은 물론이요, 민족적으로도 장래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한 자’, (5)광병적 친일 및 열성 협력자였다.

55) 民族政經文化研究所 編, 『親日派群像』(삼성문화사, 1948), pp.14-15, pp.72-77.

56) 革新出版社 編, 『民族正氣의 審判』(혁신출판사, 1949), pp.173-179.

57) 오소백, 「審判臺上의 反民者들」『新天地』 4-4(1949), p.116.

58) 『조선중앙일보』(1949.1.12.).

이광수는 2월 7일 오후에 효자동 자택에서 체포되었다. 이날 오전에는 이광수와 함께 문화 분야의 대표적 친일파로 지목되었던 최남선이 체포되었다. 이광수는 제3부 조사관 李鳳植의 지휘 아래 서기 徐廷煜·鄭徹溶에게 체포되었다. 조사관이 자수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몸이 아파서 못 잤으며,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체포 직후 그는 서대문형무소에서 간단한 예비심사를 받은 후 수감되었다.⁵⁹⁾ 이광수는 애초에 제3부에 배당되었으나, 정치적 성격의 활동 내용과 그의 위상을 고려하여 제1부에 배당되었다.

그는 2월 9일부터 다른 친일파와 함께 뮤여 머리에 용수를 쓰고 수갑을 찬 채 반민특위에 소환되어 제1부 조사부장 李炳洪에게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반민특위가 파악한 친일 행적의 사실 여부와 현재 심경을 묻는 내용에 집중되었다. 그는 자신이 이미 변절하여 스스로 희생되기로 결심하여 친일 활동을 했으며, 재판에 회부되면 민족의 의사에 따라 단죄를 받겠다는 요지로 답변하였다.⁶⁰⁾ 이광수는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친일 행적에 대한 고백서를 작성하겠다고 밝히고, 조사 도중 고백서를 작성하였다. 고백서 작성 후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조사를 받았다. 이날 작성한 고백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⁶¹⁾

臨戰報國團은 崔麟이 중심인 것으로 알았으나 내막은 자세 모르고 다만 일본인 이 조선인의 전쟁 불협력의 증오의 감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직한 것으로 해석하기에 常務理事 戰時生活부장의 직에 앉게 되었다. 大和同盟은 日人과 조선인과의 惡感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하고 역시 상무이사직에 있었다. 1940(1941-필자 주)년 12월 8일 일어난 대동아전쟁이 일어난 당시 우리 민족의 대위기가 임박한 것으로 생각코 일부 인사라도 일본에 협력 태도를 보임이 목전에 임박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기왕 講節한 몸이니 이 경우에 희생할 생

59) 『서울신문』(1949.2.8.) ; 『조선일보』(1949.2.9.) ; 「鄭徹溶 회고록」(미간행).

60) 『연합신문』(1949.2.12.).

61) 『자유신문』(1949.2.11.).

각을 가지게 되었다. 학병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표면에는 지원형식이나 내용적으로는 강제였기에 자진 지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끌려 나가 본인이나 가족에게 도리어 고통이 되겠기에 이왕이면 자진해 나가라는 것을 권고하였다.

고백서 내용은 그가 집필한 『나의 고백』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동우회사건 이후부터 조선임전보국단과 일본 도쿄[東京]의 학병강연회 등 자신의 행적과 ‘민족을 위한 희생으로서의 친일’이라는 친일 동기를 밝히고, 재판을 기다릴 뿐이라는 내용으로 끝을 맺었다.⁶²⁾ 반민특위는 1차 조사를 마친 후 10일 그의 자택을 수색하여 친일 행적을 입증할 만한 원고와 서류를 압수하였다.⁶³⁾ 이후 석방될 때까지 그의 동향은 단 한 차례 확인된다. 2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가 반민파의 자를 고문하고 있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자, 19일 조사받고 있던 이광수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단에게 고문이나 구타를 당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내용이었다.⁶⁴⁾ 그는 2월 25일 반민협의자가 기밀 누설을 할 우려가 있다는 반민특위의 결정에 따라 다른 친일파와 함께 마포형무소로 이감되었다.⁶⁵⁾

이광수는 수감 생활과 계속되는 조사로 정신적인 피로와 신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었다. 이 때문에 2월 말 무렵에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사실을 안 그의 아들이 혈서로 이광수를 보석시켜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반민특위에 제출하였다. 이때 제1부 조사부장의 주선으로 이광수와 반민특위 위원장 金尙德을 접견할 수 있었다.⁶⁶⁾ 이광수와 김상덕은 같은 시기에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에서 수학하였고, 1919년 유학생의 2·8독립선언 과정에서 ‘조선독립청년

62) 高元燮 編, 『反民者 罪狀記』(백업문화사, 1949), pp.46-49 ; 『조선일보』(1949.3.6.).

63) 『연합신문』(1949.2.12.).

64) 『조선중앙일보』(1949.2.20.).

65) 『동아일보』(1949.2.25.).

66) 고원섭 편, 앞 책, pp.46-50 ; 이정화, 앞 책, pp.81-82.

단'의 실행위원으로 함께 활동하여 알고 있는 사이였다.⁶⁷⁾ 김상덕은 이 광수의 검진을 지시했으며, 진단의 공정성을 의식한 탓인지 서울대부 속병원과 세브란스부속병원이 공동으로 검진하였다. 이광수는 폐병 3 기로 판명되었으며, 의사가 수감생활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3월 4일에 보석으로 석방되었다.⁶⁸⁾

이광수는 석방된 후 면회가 일체 금지되었고, 반민특위가 수시로 그의 동향을 확인하였다. 조사도 집에서 계속 되었다.⁶⁹⁾ 그러나 피의자 집을 방문한 조사는 반민특위 방침에서 위배되는 활동이었다. 당시 이 광수의 사례인지 확인되지 않지만, 조사관이 보석된 피의자 집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반민특위 위원장이 사실 여부를 파악하여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⁷⁰⁾ 이를 계기로 이광수의 조사도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독립국 자유민으로 자처하던 이광수가 반민특위 체포 이후에는 어떤 심경이었을까? 그것은 그가 이 무렵 지은 몇 편의 시를 통해 엿볼 수 있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고, 조사받는 상황에서도 작품 활동을 이어나갔다. 반민특위에 체포되어 수감된 직후인 2월 10일에 지은 시는 형무소 밖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고 이기적이었던 수감자가 형무소에서는 욕심을 버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모한 것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욕심을 버려 자유로워진 자신의 심경을 드러낸 것이다.⁷¹⁾ 이어 자신의 친일 행위를 어느 산보다도 높고 큰 “수미산 같은 죄”이며 “천만겁에도 갚을 길 없”다고 표현하였다. 그럼에도 “진 빚은 갚아야” 하고 “하루도 못 물린다”고 하며, 이것이 인과응보요, 운명

67) 김도형 외, 『근대 대구·경북 49인』(혜안, 1999), pp.156-157 ; 김희곤, 「김상덕의 독립운동」 『퇴계학과 유교문화』 42(2008), pp.213-214.

68) 『자유신문』『조선일보』(1949.3.6.).

69) 이정화, 앞 책, p.104.

70) 『조선중앙일보』(1949.5.17.).

71) 이광수, 「사랑」 『이광수 전집』 9(삼중당, 1973), p.509 ; 김윤식, 앞 책, p.420.

이라며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씻고자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꽃 피는 봄인데 몸으로 마음으로 앓는” 자신의 괴로운 심경을 밝혔다.⁷²⁾ 반민특위 체포 후 자신의 친일 행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심경이었다. 6월 무렵에는 그 동안 소용돌이 쳤던 마음의 동요에서 벗어나 아들 졸업식을 맞은 감회를 밝히는 등 평정심을 회복하고, “부처 나라”를 세우는데 자신을 바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⁷³⁾ 자신감도 서서히 회복해 가고 있었다.

한편 이광수가 석방될 무렵부터 반민특위,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 세 기관이 반민피의자의 보석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세 기관이 서로 협의 없이 피의자 보석을 결정하거나 보석을 불허했던 피의자를 다른 기관이 보석하여 서로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특별검찰관과 서기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원 사표를 제출하는 일도 일어났다. 실제로 병보석된 피의자가 거리를 활보하자 대중들이 의구심을 가졌으며, 한국독립당은 피의자의 보석을 비판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일부 국회의원도 가난한 자는 보석되지 못하는 반면에, 특권과 금력과 배경을 가진 자들은 쉽게 보석될 수 있다며 비판하였다. 반민족행위자가 모두 보석되고 판결이 끝난 후에만 구속될 것이라는 소리도 곳곳에서 나왔다.⁷⁴⁾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무렵 송치된 피의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 보석 또는 불구 속 상태였다. 이 때문에 피의자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반민특위와 특별검찰부의 조사와 기소 여부가 지연되었고, 특별재판부의 재판도 지연되었다.

이광수가 현실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을 때, 정국이 다시 한 번 소용돌이 쳤다. 6월 6일 친일 경찰의 공격으로 특경대가 해체되어 반민

72) 이광수, 「임」「因果應報」「괴로워라」『이광수 전집』 9(삼중당, 1973), pp.510-511.

73) 이광수 「졸업식」「부처나라」『이광수 전집』 9(삼중당, 1973), p.518.

74) 허종, 앞 책, pp.220-224.

피의자 체포가 어려워지면서 반민특위 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었고, 7월에는 반민처벌법이 공소시효 만료를 1949년 8월까지 단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이 문제로 위원장을 포함한 조사위원 대다수가 사퇴하여 새로운 조사위원을 선정하는 등 우여곡절이 계속되면서 친일파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가 급격하게 약화되었다. 반면에 이광수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사릉리 주민 10여 명이 연서로 일제 경찰이 자주 이광수의 집에 드나드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그가 반민족행위자가 아니라 민족애를 가진 애국자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⁷⁵⁾ 이 무렵 진정서와 탄원서는 반민특위가 기소 여부의 의견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주된 근거 중의 하나였다.

이광수의 조사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다시 시작되었으며, 8월 초에 마무리 되었다. 그의 조사 자료는 반민특위 조사 용지 800매가 넘는 분량으로, 다른 친일파보다도 훨씬 많은 분량이었다.⁷⁶⁾ 그는 체포된 지 6개월여 만인 8월 24일 불기소 의견으로 특별검찰부로 송치되었다. 그의 송치 절차는 반민처벌법에 반민특위가 조사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조사보고서와 의견서를 특별검찰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었다.⁷⁷⁾ 반민특위의 불기소 의견은 이광수가 친일 행위를 했지만, 피동적이었고 친일 행위보다 공이 더 크다는 이유였다.⁷⁸⁾ 그는 처벌 절차의 1단계에서 자신이 친일 행위를 능동적 행위와 피동적 행위로 구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정했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이에

75) 『자유신문』(1949.6.8.). 평전은 주민 300여 명이 이광수에 대한 일제 경찰의 동향 감시 외에 그가 주민들에게 한글과 한국사를 가르쳤다고 밝혔다(박계주·곽학송, 『春園 李光洙』(삼중당, 1962), pp.485-487).

76) 『경향신문』(1949.8.9.) ; 『주간서울』(1949.9.26.).

77) 반면에 그와 같은 날 체포된 최남선은 3월 9일에 특별검찰부로 송치되었다. 특별검찰부에 송치된 후 이광수처럼 그의 아들이 고혈압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하기도 하였다. 최남선은 3월 29일 기소되어 재판 도중 4월 7일 고혈압의 이유로 보석 석방되었으며, 한국전쟁 발발 직전까지 재판을 받았다.

78) 『주간서울』(1949.9.26.).

힘입어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특별검찰부에서 이광수를 담당한 李義植 검찰관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특별검찰부 전체회의 소집을 요청하였다.⁷⁹⁾ 8월 29일 金翼鎮 검찰관장과 8명의 검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광수의 기소 여부가 합의에 부쳐졌다.⁸⁰⁾ 결과는 4 대 4 동수로 기소 여부가 미결되자, 검찰관장 김익진이 기소 반대의 입장을 보여 결국 4 대 5로 불기소가 결정되었다.⁸¹⁾ 김익진은 기소 반대 이유를 먼저 친일 행적이 있는 국회의원들의 처벌 무산을 들었다. 이는 전날 반민특위 위원장 이인이 국회의원 5명의 친일 행위가 가볍고, 지역구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의자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말하는 것이었다.⁸²⁾ 나아가 이광수 같은 사람을 구제하여 활용하는 것이 옳다는 '친일파 인재론'을 내세웠다.⁸³⁾ 이광수가 친일파 처벌을 반대하며 친일파로 지목된 사람도 능력이 있으면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와 같았다.

郭尙勳 검찰부 차장이 친일파 처벌에서 이광수가 차지하는 상징성을 의식하여 결정의 부당성을 제기하였다. 전례에 따라 8명의 검찰관이 연서로 이광수의 결의를 再議하기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검찰부장에게 전달하였다. 검찰관장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없다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소시효 마지막날인 8월 31일 오후 4시 무렵 검찰관장을 제외한 8명의 검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이광수의 기소 여부를 재의하였다. 그 결과 1명이 기

79) 이의식은 임시정부 국무총리와 주석을 지낸 石梧 李東寧의 아들로서, 해방 후 전국준비위원회, 한국독립당, 민주독립당에서 활동한 중도파 계열의 인물이었다.

80) 당시 특별검찰부 관장은 김익진, 검찰차장 郭尙勳·申鉉商·鄭光好·徐成達·沈相駿·李義植·洪翼杓·趙炳漢 8명이었으며, 이들 가운데 김익진·정광호·홍의표·조병한은 1949년 7월에 기용되었다.

81) 김익진은 일제강점기에 평양, 강경·충주, 함흥지법 판사, 평양복심법원 판사를 지냈으며, 1927년에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였다(허종, 앞 책, pp.181-183).

82) 『조선중앙일보』(1949.8.27.).

83) 『조선일보』(1949.9.4.) ; 『주간서울』(1949.9.26.).

권하고 7명이 기소 찬성의 입장을 밝혀 이광수를 기소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의식 검찰관이 그 내용을 검찰부장에게 전달하였다.⁸⁴⁾

김익진 검찰관장은 재의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의된 사항의 재의는 모호하며, 이광수의 가족과 변호인에게 불기소 결정을 알렸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의식 검찰관이 서기국 국장에게 이광수의 기소를 지시했으며, 국장은 특별재판부 서기국에 구두로 이광수의 기소 결정 사실을 사전에 통고하였다. 담당서기관 申鉉秀가 기소 서류를 작성했으나, 오후 5시에 특별재판부 서기국 직원들이 퇴근하여 기소 서류를 접수하지 못하였다. 다음날 9월 1일 특별 검찰부가 기소 서류를 특별재판부로 보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접수가 거부되었다. 이로써 이광수의 처벌은 무산되었다. 이의식 검찰관은 이 문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다.⁸⁵⁾

이와 같이 특별검찰부가 이광수를 기소하는 과정, 즉 2단계에서 문제 점이 드러났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특별검찰부가 처리할 친일파가 많았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서류 미비로 이광수가 기소되지 않은 점은 석연치 않았다. 이때 특별검찰부는 이전처럼 송치된 친일파를 다시 조사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극히 일부의 친일파를 제외하고 반민특위 조사 내용과 의견서를 참작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관련 서류도 기소 여부를 결정한 사실과 이유를 간략하게 기재한 2페이지 분량밖에 되지 않았다. 이광수의 불기소는 시간 부족이라 기보다는 특별검찰부의 의지 부족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⁸⁶⁾

84) 『동아일보』(1949.9.9.) ; 『자유신문』(1949.9.10.).

85) 『주간서울』(1949.9.26.).

86) 당시 언론은 특별검찰부의 책임문제에 대해 이의식 검찰관의 과오와 함께 담당 서기의 무 성의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담당 서기는 8월 24일 이광수가 불기소 결의됐을 때 이 사실을 환호했다고 한다. 그는 친일파가 주필로 있던 모 신문사의 기자와 연인 관계였고, 기자는 조사받던 이광수와 자주 접촉했으며, 이광수가 10월부터 이 신문사 간부가 되고 신문에 그의 작품도 게재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당시 일반 법원도 당직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특히 공소시효 완료일이었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도 당직실을 운영했을 가능성이

당시 언론은 이광수 문제가 특별검찰부의 최종의 醜惡을 여지없이 보여준 것이라고 혹평하였고,⁸⁷⁾ 변명으로 일관한 이광수는 불기소되고, 자수한 김동환은 기소된 사실을 비꼬면서 비판하였다.⁸⁸⁾

특별재판부가 공소시효 완료일에 당직실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특별재판부도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공소시효 완료일인 8월 31일 특별검찰부가 기소한 친일파가 많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일 마지막 시간까지 처리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특별재판부가 안이하게 대처했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친일파 처벌의 의지 부족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광수의 체포부터 불기소 결정까지의 과정은 이승만 정권과 친일 세력의 집요한 방해책동이 궁극적인 원인이었고, 동시에 반민특위,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 세 기관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광수는 사법적 처벌을 모면한 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자신은 名利를 위한 민족 반역을 하지 않았으며, “민족을 위하여 살고 민족을 위하여 죽은 이광수”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입장이었다.⁸⁹⁾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IV. 맷음말

해방 후 이광수는 친일 전력을 의식하여 활동을 삼가고 침묵의 시간을 보냈다. 더불어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혐난함을 피하기 위한 은

있다. 이것이 사실일 경우 서기가 고의적으로 이광수의 기소장을 접수시키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7) 『주간서울』(1949.9.26.)

88) 『서울신문』(1949.9.6.) ; 정운현 엮음, 『잃어버린 기억의 보고서』(삼인, 1999), p.222.

89) 이광수, 「因果」『이광수 전집』9(삼중당, 1973), pp.540-541.

둔이기도 했다. 그러나 미군정이 자리 잡고 친일파 처단 요구가 좌우 대립에 묻혀가는 정국의 흐름 속에서 재기를 모색하였다. 그는 흥사단 국내조직의 결성을 계기로 대외 활동을 펼쳤으며, 안창호 전기의 집필을 계기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작품 활동도 재개하였다. 자신의 책 판매 성적과 『백범일지』 발간에의 참여는 그의 자신감을 더욱 부추겼다. 더욱이 친일파 처벌을 위한 「특별조례」 실시의 무산, 유엔의 남북한 총선거 실시 결정, 친일파 처단을 강력히 주장했던 좌파 세력의 몰락이 그의 자숙을 마비시켰고,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 사실상 확실해지자, 좌파 세력을 극렬히 비난하고, 자신이 ‘반공주의자’, ‘민족주의자’임을 공개적으로 대중에게 밝혔다. 나아가 스스로 독립국 자유민으로 규정짓고 자신을 호명한 국가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였다.

정부수립을 앞두고 정부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 친일파 처벌 요구가 다시 높아지고, 제헌국회가 반민처벌법을 제정하자, 그는 이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친일파 처벌을 반대하였다. 그는 조선인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친일 공범이므로 과거를 잊자는 논리였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친일파 처벌 요구는 강렬하였고, 반민특위에 체포되었다. 수감 생활과 자신의 친일 행적을 복기하면서 그는 ‘진실로’ 자신의 친일 행위의 무거움을 느꼈고 그 대가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다.

이광수의 처리과정에서 반민특위,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의 문제가 드러났다. 그의 조사는 석방으로 지연되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완료되었다. 그의 송치 절차는 반민특위가 반민처벌법 규정을 위반한 것 이었고, 불기소 의견은 더 큰 문제였다. 이광수는 스스로 밝혔듯이 '민족을 위한 희생'이란 명분을 내세워 청년들을 죽음의 전장으로 내몰았고, 대중에게 침략전쟁 협력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친일 활동을 펼친 '

확신범'이었다. 그럼에도 반민특위는 그의 행위가 피동적이고, 죄보다는 공이 크다며 불기소 의견을 제출했다. 특별검찰부는 '친일파 인재론'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특별재판부는 비상한 상황을 외면하고 직무를 유기하였다. 세 기관의 입장은 처벌 주체로서의 자격 부족과 친일파 처벌 의지가 없거나 약한 데서 비롯되었다. 세 기관은 이승만 정권과 친일 세력이 반민특위를 공격하고, 여기에 영향을 받아 친일파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가 약화되는 정국에서 크게 동요하였다. 결국 이승만 정권과 친일 세력의 노골적이고도 집요한 공격을 이겨내지 못했다.

■ 논문투고일자: 2015.04.16. 심사완료일자: 2015.05.06. 게재확정일자: 2015.05.20

<참고문헌>

- 『경향신문』『대동신문』『동아일보』『서울신문』『연합신문』『자유신문』
『조선일보』『조선중앙일보』『주간서울』『한국일보』
이광수, 『나의 告白』(春秋社, 1948)
이광수, 『돌베개』(生活社, 1948)
이광수, 『이광수 전집』 9.19(삼중당, 1963-1973)
이정화, 『그리운 아버님 春園』(우신사, 1993)
- 김경미, 「해방기 이광수 문학의 자전적 글쓰기의 전략과 의미 : 『돌베개』와 『나의 고백』을 중심으로」『한민족어문학』 59(2011)
김도형 외, 『근대 대구·경북 49인』(혜안, 1999)
김원모, 『영마루의 구름·춘원 이광수의 친일과 민족보존론』(단국대학교 출판부, 2009)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2(솔, 1999)
김종수, 「해방기 출판시장에서 이광수의 위상」『민족문화연구』 52(2010)
김희곤, 「김상덕의 독립운동」『퇴계학과 유교문화』 42(2008)
도진순, 「『白凡逸志』의 原本·筆寫本·出刊本」『한국사연구』 92(1996)
서은주, 「해방 후 이광수의 “자기서술”과 고백의 윤리」『민족문화연구』 58(2013)
신용철, 「돌베개의 문인 나그네 춘원」『제9회 춘원연구학회 학술대회-해방 공간과 춘원-』(춘원연구학회, 2015)
윤경로, 「친일(파) ‘비호, 옹호론’의 실상과 비판-이광수의 ‘친일파의 변’ 비판을 중심으로」『한성사학』 19(2004)
허 종,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선인, 2003)

Yi Kwang-su's Recognition of Pro-Japanese issues and procedure of treating the Special Committee for Investigation on Anti-national activity after Liberation

Heo, Jong

[Abstract]

This thesis is about reviewing the whereabouts after liberation and the recognition of pro-Japanese issues of Yi Kwang-su, one of the representative pro-Japanese, and examining the procedure of treating the Special Committee for Investigation on Anti-national activity(SCIA). For about a year after liberation, Yi Kwang-su, being aware of his pro-Japanese activity, spent some time of seclusion, abstaining from outward activity and writing. Meanwhile in the political situation that pro-Japanese were appointed to major position of power and the demand of punishment on pro-Japanese was diluted because of the left-right confrontation, he regained his self-confidence and renewed his activity, taking the opportunity of writing the biography of An Chang-Ho. On the occasion of establishment of a sole government, he revealed himself as 'anti-communist', 'nationalist', blamed the leftists harshly and made sure of the loyalty to the country, defining himself as a free citizen of an independent country.

As the Constitutional Assembly enacted the Law for Punishment of Anti-national activity, he insisted on forgiving and forgetting the past, because his pro-Japanese activity was for the nation and all the Koreans were a party to the activity only in varying degrees. Though arrested by SCIA, he was soon released delaying the investigation. He was sent to the prosecution with

nonindictment comments acknowledging rather too late that his action was passive and he rendered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The special prosecutors division brought out nonindictment putting up 'the theory of competent pro-Japanese'. Interruption of Rhee Seung-man government and the pro-Japanese powers played a decisive role in dispersing punishment of Yi Kwang-su. The lack of qualification of SCIA members and the weakened will of punishing the pro-Japanese thereof played a role as wel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hjong@cnu.ac.kr)

Key words : Yi Kwang-su, Pro-Japanese, The Law for Punishment of Anti-national activity, The Special Committee for Investigation on Anti-national activity

